

## 행복모아자유적금 특약 일부개정약관

행복모아자유적금특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”를 “비과세종합저축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적금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세금우대적용) 이 적금은 세금우대저축, <u>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</u> 가입할 수 있다. <u>다만, 회전주기가 6월인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9조(세금우대적용) ----- -----<u>비과세종합저축으로</u>-----<u>. &lt;단서 삭제&gt;</u></p>